
아름다운 생활Ⅱ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1601.8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본 약관은 100% 재생펄프를 사용하여 제작한 친환경 인쇄물입니다.

대표전화
1588-5114

www.samsungfire.com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2016. 1. 장기상품개발2파트 인쇄)

www.samsungfire.com의 보험상품물 내 "보험상품공시"에서도 약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 보험약관은 중요합니다.

-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필요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약관은 법규정에 따라 작성됩니다.

- 보험약관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마련된 표준약관(별표 15)을 준용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독下에 작성됩니다.

√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약관의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이해하신 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약관은 보험 가이드편과 보험약관 및 고객 안내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이드편	보험 약관	고객 안내사항
· 목 차 · 보험용어 해설 · 주요내용 요약서 · 가입자 유의사항 · 본 상품 주요내용	· 보통약관 · 특별약관 · 별 표	·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 고객권리 안내문 · 주요 전화번호 / 주소

- ☞ 삼성화재 홈페이지 (www.samsungfire.com) 내 상품공시실에서도 보험약관과 상품요약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목 차 I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I - 1
보험용어 해설.....	I - 3
주요내용 요약서.....	I - 5
가입자 유의사항.....	I - 7
주요내용.....	I - 12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I - 22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I - 23

보험용어 해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년, 매 6 개월, 매 3 개월 또는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보험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할 날부터 매 1 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단위를 말합니다)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 배 이내로 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 배 이내로 함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보험나이

- 1)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월 단위까지 계산 후, 6 개월 미만은 버림, 6 개월 이상은 반올림한 나이
- 2) 계약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함

주요내용 요약서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공시이율 관련

공시이율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70~130%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sungfire.com>)를 통해 공시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Ⅱ(1601.8)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 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

- ①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 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
(③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 . 만 55세이후 수령
-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 >

$$\text{연금}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text{주1)}} \text{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text{주2)})}} \times 1.2$$

주 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함

주 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 연금지급기간 >

1) 50 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 세이전	55 세	56 세	57 세	58 세	59 세	60 세이후
최소연금 지급기간	10 년이상	9 년이상	8 년이상	7 년이상	6 년이상	5 년이상

주) 만나이 기준

2) 50 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 세이후	(가입후) 5 년	6 년	7 년	8 년	9 년	10 년이후
최소연금 지급기간	10 년이상	9 년이상	8 년이상	7 년이상	6 년이상	5 년이상

주) 만나이 기준

<의료비 인출>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연금계좌>

1 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 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①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 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 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③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 가. 200만원
 -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
(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 ④ ③의 1.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⑤ ③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⑥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① 내지 ③을 준용합니다.
- ⑦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 이내로 합니다. 의료비인출에 따라 인해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비인출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소진되면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⑧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 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관련 유의사항』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 공제금액 안내표

□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기준 : 남자 40 세(60 세 연금개시, 10 년지급), 납입기간 20 년, 월납 20 만원]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보험관계 비용	계약체결 비용	판매보수	매월	10 년이내 : 기본보험료의 2.19%(4,381 원)
		유지보수		7 년이내 : 기본보험료의 3.13%(6,260 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이내 : 기본보험료의 5.10%(10,200 원) 납입기간이후 : 기본계약 적립부분 매년 보험료 적립금의 0.15% ^(주)
연금수령 기간중비용	연금수령기간중의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5%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도표 참조 ※

주) 연금지급개시 전년도까지 부과

※ 해지공제비용

경과시점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7 년이상
해지공제금액 (만원)	40	33	27	20	13	7	0	0
해지공제비율	16.65%	6.94%	3.70%	2.08%	1.11%	0.46%	0.0%	0.0%

주) 해지환급금에서 해지시 공제하는 금액

□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추가납입 보험료	계약유지 · 관리비용	추가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3.0%

□ 유지기간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수준

[기준 : 남자 40 세(60 세 연금개시, 10 년지급), 납입기간 20 년, 월납 20 만원]

7 년 이내	7 년 초과 10 년 이내	10 년 초과 20 년 이내
20,841 원(10.42%)	14,581 원(7.29%)	10,200 원(5.10%)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 생활Ⅱ(1601.8)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Ⅱ(1601.8) 주요내용

● 문답식 상품해설 (Q & A)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Ⅱ(1601.8)의
불입한도 및 세액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불입한도는 연간 1,800 만원이고,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퇴직연금보험 계약자 납입분 포함하여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 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500 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까지 세액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Ⅱ(1601.8)에 가입
하셨다가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의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A)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연금외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금수령한도 이내는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과, 계약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됩니다.

※ 세부 사항은 동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Ⅱ(1601.8)
불입완료 후 연금 수령할 때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A)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납입한도(연 400 만원)를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한도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주1)} \text{ 현재 연금재원 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주2)})} \times 1.2$
주 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함 주 2) 연금을 최초로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1,200 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Ⅱ(1601.8)의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계약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나요?

A) 연금저축손해보험의 가입자가 사망하고 그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의 사망일부터 승계된 것으로 간주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소 납입요건 및 연금수령한도의 연금수령연차 등은 최초 가입자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상기의 세제 관련사항은 '15년 12월 현재 세제관련법령에 따른 내용으로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Ⅱ(1601.8)에서 보험계약자가 수령하는 연금 이외에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이 있는데 이는 무엇인가요?

A)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회사가 운영하여 이익금이 발생한다면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연금지급시기에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금지급시기에 수령하게 되는 것은 "연금 + 증액연금 + 가산연금"입니다.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액연금	가산연금
연금지급일 전일까지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연금지급일부터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 가입자격제한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Ⅱ(1601.8)은 국내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상품구조

구 분	세부사항							
연금지급 개시나이 (A)	만 55 세 ~ 80 세							
보험 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연금지급기간의 마지막날까지							
연금 지급기간	5 년 ~ 25 년 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 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 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계약을 체결 ① 50 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 세이전	55 세	56 세	57 세	58 세	59 세	60 세이후	
	최소연금 지급기간	10 년이상	9 년이상	8 년이상	7 년이상	6 년이상	5 년이상	
	주) 만나이 기준							
	② 50 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 세이후	(가입후) 5 년	6 년	7 년	8 년	9 년	10 년이후	
	최소연금 지급기간	10 년이상	9 년이상	8 년이상	7 년이상	6 년이상	5 년이상	
	주) 만나이 기준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가입나이	0~ (A-5)세	0~ (A-7)세	0~ (A-10)세	0~ (A-12)세	0~ (A-15)세	0~ (A-20)세	0~ (A-5)세

구 분	세부사항
보험료 납입기간	5 년납, 7 년납, 10 년납, 12 년납, 15 년납, 20 년납, 전기납 (55 세납 ~ 80 세납)
보험료 납입주기	기본보험료 : 월납, 3 개월납, 6 개월납, 연납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 보험료 납입한도

납입보험료는 계약시점에 납입주기에 따라 계속 납입하기로 한 기본 보험료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① 기본보험료 : 최고 월납 150 만원(3 개월납 450 만원, 6 개월납 900 만원, 연납 1,800 만원)으로 하며, 최저한도는 저축성보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운영하되, 월납 5 만원(3 개월납 15 만원, 6 개월납 30 만원, 연납 60 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단, 단체취급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월납 3 만원(3 개월납 9 만원, 6 개월납 18 만원, 연납 36 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 ②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매 1 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단위를 말함)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 배 이내로 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 배 이내로 합니다.

주)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 합계액을 말함)은 1,800 만원 이내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3 년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 회 이내로 신청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 회 신청당 12 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개월 수 포함)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 1 항의 경우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로 인하여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 2 항에 따라 연장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장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 1-2 조 제 4 호에서 정한 저축성보험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④ 납입유예기간 중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 7 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최고(독촉)을 합니다.
- ⑤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 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및 기본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⑦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 납입유예기간 중))을 아래 각 호에 정한 날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합니다.

- 1.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 기본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
- 2.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 납입유예기간 중) : 매월 계약해당일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 ①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 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회 기본보험료 납입 후 책임준비금이 제 4 항의 공제액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미달되는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 2 항에 의하여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 ④ 제 2 항에 의하여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를 납입을 하지 않은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 연체·실효기간 중)을 아래 각 호에 정한 날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하며, 적립이율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Ⅳ**로 합니다.

- 1.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 기본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
- 2.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 연체·실효기간 중) : 매월 계약해당일

- ⑤ 제 3 항에 의하여 연장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으로 연장 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장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 1-2 조 제 4 호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인출에 관한 사항

- ① 「의료비인출」이란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의료비인출은 연금 개시 이후 가능하며,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에 대한 책임준비금 이내로 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 및 연금외수령으로 일시 인출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범위내로 합니다.

- ③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 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 ①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이 보험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Ⅳ**로 부리하여 드리며 이외에 배당금에 의한 증액연금, 가산연금을 더하여 드립니다.
- ② 이 보험은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 만원 한도로 납입 보험료의 12%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500 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까지 세액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 상기의 세제 관련사항은 '15년 12월 현재 세제관련법령에 따른 내용으로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 보험료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그리고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적용이율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적용이율이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연금저축 공시이율Ⅳ란?

이 보험에 적용되는 연금저축 공시이율Ⅳ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기준이율의 70~13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Ⅱ(1601.8)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의 적립순보험료는 이 보험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Ⅳ"(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에 의해 연동되어 적립되며, 2015 년 12 월 현재 적용되는 이율은 연단위 복리 2.80%입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 년 이하에는 연단위 복리 1.75%, 5 년 초과 10 년 이하에는 연단위 복리 1.50%, 10 년 초과에는 연단위 복리 1.0%로 합니다.

공시이율의 적용은 매월 1 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매월 1 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 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계약제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계약제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 저희 회사에서는 이 상품에 대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자배당의 종류에는 이자율차배당, 사업비차배당, 위험률차배당이 있으며, 이를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증액연금	가산연금
연금지급일 전일까지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연금지급일부부터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의 배당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자율차배당 :

$$\begin{aligned} & \text{전보험연도말 해지환급금식 책임준비금} \times \text{이자율차배당률} \\ & = \text{전보험연도말 해지환급금식 책임준비금} \\ & \times (\text{이자율차배당 기준율} - \text{적용이율}) \end{aligned}$$

② 사업비차배당 : 연간 유지비 × 사업비차배당기준율

③ 위험률차배당 : 연간 위험보험료 × 위험률차배당률

단, 위험률차배당률 : 상품별이재차익률(이재차손익/위험보험료)
× 위험률차배당기준율

□ 과거 5년간의 배당률 및 배당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FY' 10		FY' 11		FY' 12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이자율 차배당	연금	5.0%	31,448	5.2%	40,243	4.9%	24,488
	연금 신공시	5.3%	1,309	5.2%	1,377	4.62%	697
사업비차배당		5%	1,909	3.3%	1,599	0.6%	206
위험률차배당		35%	775	14.6%	787	4%	146
총 계		-	35,441	-	44,006	-	25,537

구 분		FY'13		FY'14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이자율	연금	4.9%	42,520	4.25%	18,865
차배당	연금신공시	3.85%	1,377	3.75%	4,187
사업비차배당		0.6%	312	4.5%	2,324
위험률차배당		5%	274	23.0%	1,168
총 계		-	44,482	-	30,036

주)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은 FY'14 기준 3.5%입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써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Ⅱ(1601.8)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의료법】

제 3 조 (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 의원
 -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 병원
 - 다. 한방 병원
 - 라. 요양 병원(「정신보건법」 제 3 조 제 3 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 병원,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 3 조의 2 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종합 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 의료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2 항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상법】

제 651 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 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서명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을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을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하 생략)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 주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o 서 면 : 본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29) 또는 각 영업점
- o 전 화 : 1588-5114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o 서 면 : 본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29) 또는 각 영업점
 - o 전 화 : 1588-5114
 - o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마케팅 목적의 동의철회는 즉시 가능합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o 서 면 : 본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29) 또는 각 영업점
 - o 전 화 : 1588-5114
 - o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NICE 신용정보(주)	: ☎ 02-2122-4000	인터넷 www.nice.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 02-3445-5000	인터넷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02-708-6000	인터넷 www.kcb4u.com

3.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당사 고객정보 관리·보호 고충처리자
: 02-758-4404 / 서울시 중구 을지로29
 - 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02-3702-8541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68
 -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02-3145-5427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 생활 II (1601.8)

목 차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6
제1조 목적	6
제2조 용어의 정의	6
제2관 보험금의 지급	8
제3조 연금의 지급	8
제4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9
제5조 주소변경통지	10
제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11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1
제7조 보험계약의 성립	11
제8조 청약의 철회	12
제9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3
제1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14
제11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15
제12조 보험나이 등	20
제13조 계약의 소멸	20
제14조 특별계정의 운용	21
제4관 보험료의 납입	21
제15조 보험료의 납입한도	21
제16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1
제17조 보험료 납입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22
제18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23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25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26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27
제2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27
제22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29

제23조 해지환급금	29
제24조 보험계약대출	30
제25조 계약자배당금의 지급	31
제6관 분쟁의 조정 등	32
제26조 분쟁의 조정	32
제27조 관할법원	32
제28조 소멸시효	32
제29조 약관의 해석	33
제30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33
제31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33
제32조 개인정보보호	34
제33조 준거법	34
제34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34

별표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36
---------------------------------	----

제도성 특별약관

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38
2. 단체취급 특별약관	40



보 통 약 관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 생활 II (1601.8)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계약자에 대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4.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

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3.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③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나이에 도달하는 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3.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④ 보험료 관련 용어

이 계약의 보험료는 다음에 정하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1.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년, 매6개월, 매3개월 또는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 계약승낙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납입한도 내에서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연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금액을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나누어 계산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공시이율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제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 ④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본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연금액은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 따릅니다.
- ⑦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제1항의 연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⑧ 회사가 제7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연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순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에서 정해진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 보험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Ⅳ(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하며,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70%~13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5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3조(연금의 지급)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9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 · 우편 ·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연금지급개시시기, 연금지급기간
 2. 기본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3. 기본보험료
 4.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

5.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의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을 연금지급 개시 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1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 적용)(이하 「연금계좌 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 인출 또는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 ☐ 가입일 이후 5년 이후 수령
☐ 만 55세 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 >

연금 한도액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1)} \text{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2)})} \times 1.2$
-----------	---	--

- 주) 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 개시일로 함
 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 연금지급기간 >

☐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이후
최소연금 지급기간	10년이상	9년이상	8년이상	7년이상	6년이상	5년이상

주) 만나이 기준

☐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후
최소연금 지급기간	10년이상	9년이상	8년이상	7년이상	6년이상	5년이상

주) 만나이 기준

< 의료비 인출 >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료비 연금계좌 >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 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 · 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이 질병 ·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가. 200만원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
(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

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⑥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⑦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합니다.
- ⑧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 이내로 합니다. 의료비인출에 따라 인해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비인출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소진되면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 나이가 만 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개월 11일 = 26세

제13조 (계약의 소멸)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14조 (특별계정의 운용)

회사는 1개이상의 특별계정(2개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 (보험료의 납입한도)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만원을 한도(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제2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에 따라 계약승낙일부터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17조 (보험료 납입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2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개월 수 포함)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연장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장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호의 저축성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④ 납입유예기간 중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7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을 합니다.

- ⑤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⑦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 납입유예기간 중))을 아래 각 호에 정한 날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합니다.
 - 1.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 기본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
 - 2.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 납입유예기간 중) : 매월 계약해당일

제18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4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

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하는 대출이율이며,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헌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

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 후 책임준비금이 제4항의 공제액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에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 연체·실효기간 중)을 아래 각 호에서 정한 날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하며,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합니다.
1.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 기본보험료 납입주기 별 계약해당일
 2.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 연체·실효기간 중) : 매월 계약해당일
- ⑤ 제3항에 따라 연장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장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호의 저축성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령에 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나누어(금액분할) 이전하는 경우
 3. 압류·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가.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나.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 나. 보험사고 발생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5.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⑥ 계약자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제2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른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3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적립부분 순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순보험료에 대하여 회사는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계약건별로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이하에는 연단위 복리 1.75%, 5년 초과 10년 이하에

는 연단위 복리 1.5%, 10년 초과에는 연단위 복리 1.0%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0.5%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이 공시이율보다 큰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로 부리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1] 참조)에 따릅니다.
- ③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본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항에 정한 해지환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4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계약자가 제1항의 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2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차감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만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계약자배당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범위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1.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2. 연금지급개시일이 도래하기 전일까지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3조(연금의 지급)에서 정한

연금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이하 「증액연금」이라 합니다)

3.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이하 「가산연금」이라 합니다)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6관 분쟁의 조정 등

제26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소멸시효)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반환청구권, 보험금 반환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5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0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31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2조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3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34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 표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기간		지급이자
연금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기간의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연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해지환급금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연금지급사유 발생일 이전에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연금지급사유 발생일까지는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도성 특별약관



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 (보험료납입)

- ①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거나 급여이체를 통하여 납입합니다.
- ②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지정 금융기관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 금융기관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 「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 또는 급여이체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니다.

2.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단체취급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①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 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② 계약자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내지 단체의 소속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수가 최초 계약시 5명 이상(이하 「피보험자단체」라 합니다)이거나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수가 최초 계약시 5명 이상(이하 「계약자단체」라 합니다)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 소속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대표자의 선정)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또는 제1조(적용범위) 제2항에서 정한 계약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단체취급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제2조(대표자의 선정)에서 정한 대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회사의 보장은 회사가 승인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서면이 회사에 접수된 때를 승인한 때로 봅니다.
 1. 피보험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시에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변경된 보험료를 받고, 추가 또는 환급되는 책임준비금은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 증가나 교체시에 회사가 받아야 할 책임준비금차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보장은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2. 피보험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증가 또는 교체될 경우에 암과 같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보장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증가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적용되며, 피보험자 교체시에는 회사의 승인일부터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3. 계약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의 감소시에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을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새로이 교체되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변경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적용보험료)

- ① 계약자수 또는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가 감소하여 5명 미만인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후 피보험자수가 증가하여 5명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 (보험료납입)

- ① 보험료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일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계약자단체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해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하였을 때
 - 2.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않았을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단체취급 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7조 (적용특칙)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니다.